

#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12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9일

3. 제안이유

-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함으로써
- 시험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

가. 문제 출제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2,300 → 3,000원

나. 문제 채점 수당

- 주관식 { 10부까지 기본료 25,000 → 30,000원  
1부초과 660 → 800원

다. 면접시험종사원 수당(일당) 6,000 → 6,500원

라. 감시 수당(일당)

- 평일 6,000 → 6,500원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현행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시행과 관련한 종사자들에게 시험의 규모 및 성질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지급 가능 범위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

'96년도 부터 실시되는 각종 시험의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지급기준액이 인상책정 됨에따라 '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시험수당 지급범위인 출제수당, 채점수당,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, 문제편집수당, 문제선정심의 수당, 감시수당 중 출제수당의 객관식 출제수당에 있어 현행 지급액인 2,300원을 3,000원으로 하고 채점수당의 주관식 채점수당에 있어 10부까지의 기본료를 현행 25,000원에서 30,000원으로 하고 1부 초과부당 600원을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면접 및 실기시험의 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6,000원에서 6,500원으로 하고 평일감시수당 6,000원을 6,500원으로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시험시행 관련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승인하여 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첨 부

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